

함께하는 고통분담 함께웃는 밝은 내일
서 울 특 별 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391/4 / 전송 731-6795

문서번호 주개 58531-2530

시행일자 1994. 10. 26.

(경유)

수신 (제 1 안)

참조 내부결재

취급		시 장
보존		
주택국장	전결	03/10
주택개량과장	주택개량과장	보고 및 협조 통재관 법무 담당관 (공고안심사) 회계심사과장
기안	이 인재	기안

제목 도시계획(주택개량제개발) 입안 및 주민의견청취

1. 우리시 관악구 봉천2동 457번지 일대에 대하여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주택개량제개발 구역지정 요청이 있어 별첨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1조(도시계획의 입안)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

2. 도시계획법 제16조의2(주민의 의견청취)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(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등)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입안내용을 일반신문에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, 도시계획법 제12조(도시계획의 결정)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안내용

○ 주택개량제개발구역 지정

구역명	위치	면적(m ²)	비고
봉천9	관악구 봉천2동 457번지 일대	21,524.9	신규지정

나. 주민의견청취

1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2. 공람장소 : 관악구 주택과

3. 공고내용 : 공고안 참조(별첨)

4. 공고방법 : 일간신문 2개지 계제(2종의 일간지에 조간, 석간 또는 1일 이상 시차를 두어 계제)

5) 소요예산

○ 예 산 액 : 1,617,000원

○ 산출근거 : 3단 × 7cm × 35,000 × 2개지 × 1.1(부가세) = 1,617,000원

○ 예산과목 ○ 통천9 주택개량제개발구역

(주택개량제개발목별회계) 계개발사업, 사무비, 사무관리,

사무관리, 일반운영비(일반수용비) : 808,500원

○ 신당4동1 주거환경개선지구

(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) 주거환경개선사업, 사무비,

사무관리, 사무관리, 일반운영비(일반수용비) : 808,500원

○ 지출방법 : 공고후 한국언론회관 청구에 의거 적용

첨부 1. 공고안 1부

2. 도시계획안 도서 및 시의회 부의안건 각 1부

3. 신청내용 검토조서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공보2단당관

제목 도시계획안(주택개량제개발구역) 신문공고 의뢰

1) 별첨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
제6항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일간신문에 공고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
1) 공람기간 : 공고일로 부터 14일간

2) 공람장소 : 관악구 주택과

3) 공고내용 : 공고안 참조(별첨)

4) 공고방법 : 일간신문 2개지 계재(2종의 일간지에 조간, 석간 또는 1일 이상
시차를 두어 계재)

5) 소요예산

원본대조필

○ 예 산 액 : 1,617,000원

○ 산출근거 : 3단 × 7cm × 35,000 × 2개지 × 1.1(부가세) = 1,617,000원

○ 예산과목 ○ 통천9 주택개량제개발구역

(주택개량제개발목별회계) 계개발사업, 사무비, 사무관리,

사무관리, 일반운영비(일반수용비) : 808,500원

○ 신당4동1 주거환경개선지구

(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) 주거환경개선사업, 사무비.

사무관리, 사무관리, 일반운영비(일반수용비) : 808,500원

○ 지출방법 : 공고후 한국언론회관 청구에 의거 적용

첨부 1. 공고안 1부

주택개량과장

(제 3 안)

수신 관악구청장. ~~공구청장~~

참조 주택과장

제목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에 따른지시 ~~보통신당동330번지일대주거환경개선지구로~~

1. 귀구 봉천2동 457번지 일대를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 도시계획안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~~증명~~시키고자 공고하였음을 통보하니 도시계획위원회원에 도시계획 입안자로 표기(구역지정 고시 또는 축소일까지)하여 증명을 발급하고
2. 관계서류 사본을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지정된 장소(주택과)에서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공고문 사본을 구청 및 관할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토록하여 주민의 충분한 의견청취후, 제출된 주민의견 및 귀구 검토의견을 공람종료후 5일이내 보고하기 바람.

첨부 1. 공고문 사본 1부

2. 도시계획안 입안도서 1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(제 4 안)

수신 기획담당관

원본대조필

제목 시의회 의견청취 회화

1. 우리시 관악구 봉천2동 457번지 일대를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청취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시의회 조의안건 및 도면 각3부. 끝.

주택개량과장

(제 5 안)

수신 수신처참조

제목 도시 계획입안 및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협의

대구광역시 관광청
대구광역시 관광청

1. 우리시 관악구 봉천2동 457번지 일대를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위한

주민의견청취를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거
결정과같이 일간신문에 공람공고 하였으니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 입안내용을 검토후 의견
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1. 공고문 사본 1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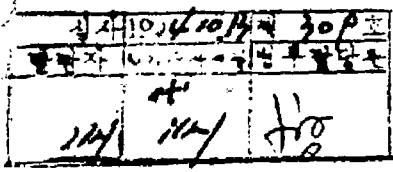
2. 도시계획입안 도서 1부. 끝.

주 택 개 량 과 장

수신처 : 도시계획과, 공원과, 시설계획과, 도로계획과



원본 대조필



고
0

고(안)

서울특별시공고 제 1994 - 3 호

~~도시계획~~ 공람 공고

1. 봉천9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과 신당4동]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
청취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제6항의 규정
에 의하여 도시계획안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
공람합니다.

2. 도시계획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1994년 10월 25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공람기간 : 1994. 10. ~ 1994. 11. .(14일간)

나. 공람내용

(1)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

도시계획안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공람의견서 제출장소
주택개량재개발 구역 신규지정	봉천9	관악구 봉천2동 457번지 일대	21,524.9	관악구 주택과

(2)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

도시계획안	지구명	위치	면적(㎡)	공람의견서 제출장소
주거환경개선 지구 신규지정	신당4동]	중구 신당동 330번지 일대	2,905	중구 주택과

다. 관계도서 : 중구 주택과와 관악구 주택과에 배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음.

